

## □ 의료기관(의원급)에서 의심환자 대응(외래)

1. (신고)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피부병변 등 노출방지 위해 긴팔가운,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여 별도 공간\*에 대기하도록 조치  
\*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대기. 다만, 별도공간이 없는 경우 구급차로 환자를 보건소로 이송 가능
2. (역학조사) 관할 보건소는 기초역학조사 및 역학조사서 작성 후 시도 보고 및 사례분류 요청
3. (보고)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유선 보고
4. (병상배정요청) 보건소로부터 병상배정을 요청받은 시도는 배정된 병상을 보건소로 통보
5. (격리 및 입원검사 안내) 보건소는 격리통지서 배부 및 검사 등 안내
6. (이송) 이송병원에 역학조사서 팩스 전송 및 환자도착시간 사전 유선 알림 후 역학조사서 및 신분증 준비하여 보건소 구급차로 동행하여 이송
7. (신고) 배정 의료기관은 의심환자를 관할 보건소로 신고, 보건소는 신고 접수
8. (접촉자 조사 및 관리) 보건소는 접촉자 조사 후 명단을 질병관리청(종합상황실, 검역정책과) 및 시도에 통보, 접촉자 대상 안내(SMS발송)  
\* 접촉자명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
9. (검사의뢰 및 이송) 의료기관은 검체 채취(3종류) 후 3중 포장 및 검체시험 의뢰서를 작성, 보건소는 개인보호구 착용 후 질병관리청으로 검체 운송
10. (후속조치) 보건소는 결과를 통보, 양성이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심층역학조사, 접촉자 추가조사, 재분류 등 후속조치 실시, 음성이면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및 SMS 안내

## □ 의료기관(병원급)에서 의심환자 대응

- 의원급과 같은 절차를 따름, 다만 신고의료기관에서 1인실 격리병상에 배정 후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 권역별 지정병상으로 이송하지 않고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가능
- (외래환자) 진료 시 의심환자 발견할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 및 긴팔가운, 장갑,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토록 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로 신고하여 권역별 지정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체채취 및 의뢰
- (입원환자) 1인실 격리실로 이동하여 검체채취 혹은 보건소 신고하여 권역별 지정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체채취 및 의뢰 진행

## □ 보건소 신고 및 능동/수동 감시 중 의심환자 확인 대응

- 보건소 구급차 도착 전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분리된 공간으로 이송하여 기초역학조사 후 시도에 보고 및 사례분류 요청,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의원급 의심환자 대응절차를 따름

## □ 1339 신고 의심환자 확인 대응

-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할보건소에 인적정보 통보, 보건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팔 옷 착용 및 자택대기, 동거인이 있을 경우 접촉을 삼가하고 구분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안내